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연월일 | 20 . . . (제 회) | |

전 파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 .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과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24.7.24.)임에 따라 전과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사피해 유형별로 손실보상금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 가능한 기관, 자기적합확인자가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사항,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합성평가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부적합 보고의 세부 절차와 과태료 기준,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서류 제출 의무와 행정처분 기준, 시험기관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불법 드론 전과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산정기준과 절차를 규정(제53조의4, 별표 5의2)

나.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자기적합확인 제도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6, 제117조의2, 제119조, 제123조, 별표 23, 별표 28)

1)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 시험할 수 있는 기관, 서면 관리,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 적합성평가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 행정처분 완화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험기관 관리, 부적합 보고, 대리인 지정 등 전파법
개정에 따른 전파법 시행령 정비(제77조의9, 제77조의11, 제77조의12, 제7
7조의14, 제77조의16, 제97조의3, 제120조부터 제123조, 별표 14의3, 별
표 23부터 별표 24, 별표 27의2, 별표 28)

1)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관보→ 관보 및 인터넷), 시험
근거 자료 미작성 등의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등

2) 부적합 보고의 절차,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규정 등

3)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출서류와 허위 지정 시 행정처분
규정 명확화

4) 시험기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중(“24.4.24.~5.7.)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4. 5.3. ~ 6.12.)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강화 해당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절차)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

가.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다.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발생한 손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산정하는 금액

3.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77조의3의 제목“(적합등록)”을“(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을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적합등록”을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으로, “법 제58조의2제4항”을 “법 제58조의2제5항”으로, “등록을 한 날”을 “등록 및 확인을 한 날”로,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

③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8조의8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2.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작성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자기적합확인을 하는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과생모델명 포함)
3. 기자재 관리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기자재의 외관 사진
6.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7. 자기적합확인을 하는 자의 날인 또는 서명
8. 동일한 기자재 확인 여부(자기적합확인 서면관리 및 공개를 하는 자와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시험을 한 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

제77조의4의 제목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선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8조의2제5항”을 “법 제58조의2제6항”으로, “변경된”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서면 관리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제77조의3제4항을 따른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적합함을 확인한 후 서면 관리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변경 및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5의 제목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을 “자는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에”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평가정보”라 한다)를”을 “사항을”로 한다.

제7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제77조의5제1항제2호 중 “명칭 및 모델명”을 “명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6.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기자재의 모델명 및 식별부호,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모델명 및 관리번호

② 법 제58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에는 제77조의3제4항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제77조의6제1항 중 “법 제58조의2제7항”을 “법 제58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58조의2제8항”을 “법 제58조의2제10항”으로, “법 제58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제77조의9제3항 중 “관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7조의11제2항제1호 중 “1년마다 실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부정확한 방법으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 2. 부정확한 시험 또는 부적격한 인원, 설비로 시험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 3. 그 밖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12제2항 중 “관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7조의14를 제77조의15로 하고, 제77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 등)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부적합 여부에 대

한 사실 확인요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법 제58조의11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적합 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자(이하 “부적합 보고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11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정 또는 수거 등 조치계획서(이하 “시정·수거 등 조치계획서”라 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수거 등 조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보고자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를 받은 부적합 보고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수거 등 조치 계획서를 보완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적합 보고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수거 등 조치 계획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치 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수거 등 조

치 결과가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보고자에게 필요한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적합 보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법 제58조의4제1항의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적합 보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시정·수거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장의2에 제77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16(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58조의13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국내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의3 중 “적합성평가의”를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의”로,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을 “법 제58조의5와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지정갱신신청,”으로 한다.

제117조의2제2항제2호 중 “적합등록”을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8조의2제5항”을 “법 제58조의2제6항”으로, “아니한”을 “않거나 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표시 및 자기적합확인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9조 중 “별표 24”를 “별표 23”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제2항”을 “법 제73조제3항”으로, “별표 27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 별표 27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 별표 27의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매출액 등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및 그 근거를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2조제1항 중 “법 제73조제3항”을 “법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제8호 중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제5항·제7항 및 제10항”을 “법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4항·제6항 및 제9항·제12항”으로, “적합성평가”를 “자기적합확인, 적합성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22호 및 제2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중전의 제15호) 중 “부적합보고의 접수”를 “부적합보고”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중전의 제17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 및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법 제58조의2를 위반한 자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 및 해당 기자재”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2호(중전의 제18호) 중 “법 제77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법 제77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중전의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
15.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의 고시에 관한 사항
18. 법 제58조의13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21.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23. 법 제90조제5호의3부터 제5호의7까지 및 제92조제4호부터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23조제2항제2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 및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법 제58조의2를 위반한 자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 및 해당 기자재”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법 제73조”를 “법 제7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법 제77조제3호 및 제6호”를 “법 제77조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법 제89조의2·제89조의3 및 제90조제1호부터 제5호의2까지, 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호의8부터 제6호까지 및 제91조·제9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3의 제목 중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97조의3 관련)”을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지정갱신) 수수료 (제97조의3 관련)”으로 한다.

별표 14의3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청 수수료(법 제58조의2 및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신청)
 별표 14의3 나목제2호 중 “지정신청 및”을 “지정, 지정갱신,”으로 하고, 같은 표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적합성평가”을 “법 제58조의5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으로 하며, 같은 표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적합성평가”을 “법 제58조의5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으로 하고, 같은 표 다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표 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58조의8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서류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3) 현장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라. 법 제58조의8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가) 지정분야 추가: 50,000원

나) 시험항목 추가: 20,000원

2) 서류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3) 현장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별표 23 제2호 위반행위란 제2호 중 “적합성평가표시”를 “적합성평가표시 또는 자기적합확인표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위반행위란 제3호 중 “적합성평가표시”를 “적합성평가표시 또는 자기적합확인표시”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위반행위란 제4호 중 “적합성평가”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기자재”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위반행위란 제5호 중 “법 제58조의2제4항”을 “법 제58조의2제5항”으로 하고, “비치”를 “보관”으로 하며, 같은 표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 6.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변경사항의 서면관리·공개 중 일부 또는 전부하지 않은 경우 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에 대한 서면관리·공개 중 일부 또는 전부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서면관리·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의 4제1항제5호 | 시정명령 | 생산·수입 · 판매 또는 사용 중지 (2개월) | 취소 | 시정명령 |
| 7. 법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 법 제58조의 4제1항제6호 | 취소 | | | |

별표 24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

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다. 시험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측정 한 값, 그래프, 사진 등 시험 근거 자 료를 작성·보관(5년 이상)하지 않거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별표 24 제3호가. 위반행위란 가목 중 “시험”을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

으로 한다.

별표 27 중 “(제121조 관련)”을 “(제121조제1항제1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 제2호가목16)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5호의8”을 “제5호의1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위반행위의 근거 법조문의 과태료 금액란 위반행위 6) 중 “법 제58조의2제4항”을 “법 제58조의2제5항”으로, “적합등록”을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으로, “비치”를 “보관”으로 하며, 같은 란 중 “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표 7) 중 “법 제58조의2제5항”을 “법 제58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표 8) 중 “법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를 “법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로 하고, 같은 란 중 “제5호의3”을 “제5호의4”로 하며, 같은 표 9) 중 “법 제58조의2제7항”을 “법 제58조의2제9항”으로 한다.

별표 28 제2호나목 위반행위의 근거 법조문의 과태료 금액란 위반행위9)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표 10) 중 “제5호의4”를 “제5호의5”로 하며, 같은 표 11) 중 “제5호의5”를 “제5호의6”으로 하고, 같은 표 12)

중 “제5호의6”을 “제5호의8”로 하며, 같은 표 13) 중 “제5호의7”을 “제5호의9”로 하고, 같은 표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15)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 확인을 하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 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경우 | 법 제89조의 3 제3호 | | | |
| 가. 제조·수입·판매업자 | | 200 | 300 | 500 |
| 나. 그 밖의 자 | | 경고 | 30 | 50 |
| 16)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 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 우 | 법 제90조 제 5호의2 | | | |
| 가. 제조·수입·판매업자 | | 100 | 200 | 300 |
| 나. 그 밖의 자 | | 경고 | 20 | 30 |
| 17)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90조 제 5호의7 | 100 | 200 | 300 |

별표 28 제2호나목 위반행위의 근거 법조문의 과태료 금액란 위반행위

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18) 법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 하 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2조 제5호 | 50 | 70 | 100 |
| 19) 법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 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 성평가 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 니하고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 | 법 제92조 제6호 | 50 | 70 | 100 |

| | | | | |
|---|--|--|--|--|
| 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 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23, 별표 24,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과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2]

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53조의4제1항제3호 관련)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2.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을 준용하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부상 등급 중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본다.

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사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을 준용하되,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의 기준은 제4호와 같다.

4.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호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 가. 과징금을 산출하는 경우 법 제58조의7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의 일수에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일당 매출액에 대한 경비와 이익의 합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하며,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정분야별 과징금 산정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출방법

$$\text{과징금} = \text{업무정지 기간의 일수} \times \frac{\text{연간 매출액}}{365} \times (\text{기준경비율} + \text{영업이익률})$$

- 가. 업무정지 기간의 일수는 [별표 24]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분야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별표 22의2]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각각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적용한다.
- 나. 연간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분야의 1년간 총 매출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지정, 업무 중지 등의 이유로 전년도 1년간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 순으로 연간 매출액을 산출·조정한다.
- 다. 기준경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귀속 경비율 고시 중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종(업종코드(742201))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 라. 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작성된 기업경영분석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연도 영리법인의 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 <p>제53조의4(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절차)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p> <p>가.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p> <p>나.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p> <p>다.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p> <p>2.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발생한 손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산정하는 금액</p> |

3.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
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산정
한 금액

②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
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
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
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다.

제77조의3(적합등록) ① (생략)

② 법 제5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
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는 -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
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법 제58조의8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2.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이하 “자기적합
확인”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작성 및 공개에 필요
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자기적합확인을 하는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파생
모델명 포함)

- 3. 기자재 관리번호
-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 5. 기자재의 외관 사진
- 6.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 7. 자기적합확인을 하는 자의
날인 또는 서명
- 8. 동일한 기자재 확인 여부(자기적합확인
의 서면관리 및 공개를 하는 자와 법 제58조의2
제4항에 따른 시험을 한 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

③ 적합등록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을 한 날부터 제조·수입·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법 제58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 ⑤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 법 제58
조의2제5항----- 등록 및
확인을 한 날-----

----- 보관-----
--.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8조의2제6항 -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①

----- 변경 -----

- ②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서면 관리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제77조의3제4항을 따른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적합함을 확인한 후 서면 관리 및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변경 및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평가정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 3.·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제77조의6(잠정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 2. ---- 명칭
- 3.·4. (현행과 같음)
- 5.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 6.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기자재의 모델명 및 식별부호,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모델명 및 관리번호

② 법 제58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에는 제77조의3제4항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7조의6(잠정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9항-----

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④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통지된 날 또는 그 밖에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58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8조의2제10항-----

----- 법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4항-----

-----.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④·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자(이하 “부적합 보고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11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정 또는 수거 등 조치 계획서(이하 “시정·수거 등 조치 계획서”라 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수거 등 조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보고자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를 받은 부적합 보고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수거 등 조치 계획서를 보완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적합 보고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수거 등 조치 계획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치 결과를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수거 등 조치 결과가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보고자에게 필요한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적합 보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법 제58조의4제1항의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적합 보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시정·수

| | |
|--|--|
|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119조(시정지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 제119조(시정지시 등) ----- ----- ----- ----- ----- 별표 23----- ----- -----. |
| 제120조(과징금의 부과·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20조(과징금의 부과·납부) ① ----- -----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 ----- ----- ----- ----- -----. |
| ② ~ ⑥ (생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 ----- 법 제73조제3항----- ----- 다음 각 호와 -----. |
| <신설> |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 별표 27 |

| | |
|---|--|
| <신설> |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 별표 27의2 |
| <신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매출액 등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및 그 근거를 지정 시험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73조제4항----- -----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
| 1. ~ 7의3. (생략) | 1. ~ 7의3. (현행과 같음) |
| 8.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제5항·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 8. 법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4항·제6항 및 제9항·제12항 ----- 자기 적합확인, 적합성평가의 변경 ----- |
| 9. ~ 13. (생략) | 9. ~ 13. (현행과 같음) |
| <신설> | 14.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른 |

| | |
|--|---|
| <신 설> | 상호인정협정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 |
| 14. · 15. (생 략) | 15.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의 고시에 관한 사항 |
| 15. 법 제58조의11에 따른 부적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 16. · 17. (현행 제14호 및 제15호와 같음) |
| <신 설> | 17. ----- 부적합보고----- |
| 16. (생 략) | 18. 법 제58조의13에 따른 국내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 17.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 · 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 19. (현행 제16호와 같음) |
| <신 설> | 20. -----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 및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 |
| 18. 법 제77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청문 | 서 법 제58조의2를 위반한 자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 및 해당 기자재----- -- |
| 19. 법 제90조제5호의2부터 제5 | 21.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징수 |
| | 22. 법 제77조제6호 및 제7호-- -- |
| | 23. 법 제90조제5호의3부터 제5 |

| | |
|---|---|
| 호의8까지 및 제92조제4호 ·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호의7까지 및 제92조제4호부터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 ② ----- ----- -----. |
| 1. ~ 20. (생 략) | 1. ~ 20. (현행과 같음) |
| 21.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 · 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 21. ----- -----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 및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 서 법 제58조의2를 위반한 자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 및 해당 기자재----- -- |
| 22. (생 략) | 22. (현행과 같음) |
| 23.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 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23. 법 제73조제1항----- ----- ----- ----- |
| 24. (생 략) | 24. (현행과 같음) |
| 25. 법 제77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청문(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 | 25. 법 제77조제8호 및 제9호-- ----- ----- |

| | |
|--|---|
| <p>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p> <p>26. (생략)</p> <p>27. 법 제89조의2·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징수 및 법 제90조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및 제92조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8. (생략)</p> <p>③ ~ ⑥ (생략)</p> | <p>-----</p> <p>26. (현행과 같음)</p> <p>27. 법 제89조의2·제89조의3 및 제90조제1호부터 제5호의2까지, 제5호의6(법 제58조의6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호의8부터 제6호까지 및 제91조·제9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징수는 제외한다)</p> <p>28.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 |
| 연락처 | (044) 202 - 4954 |